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2369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1. 6. 2.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0. 7. 2. 접수 제559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15. 5. 1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번호 D, 보증금액 270,000,000원(그 후 9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 2016. 5. 11.(그 후 2021. 5. 7.까지로 연장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C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 B은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

- 1) C은 2020. 8. 31.경 부실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91,300,563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였다.
- 2)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그 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에 대해서도 C이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법적절차비용 중 미회수된 잔액은 1,561,731원이다.

다. 근저당권설정

한편, B은 2020. 7.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0. 7. 2. 접수 제55904호로 채권최고액 427,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B의 재산상태

1)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81,764,000원 상당이다.

2) 반면 B은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9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외에도 E조합에 410,000,000원, F단체에 100,000,000원, G카드에 11,117,000원, H카드에 1,819,000원, I조합에 2,300,000원, J카드에 4,000,000원, K카드에 2,300,000원, L에 21,696,000원, 피고에 427,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가 적극재산을 능가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발주한 공사들을 수주받아 천공공사를 해왔는데,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C의 대표이사인 B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대신 공사대금을 427,0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C의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하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민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광주시 공장용지 725㎡

2. 경기도 광주시

위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공장(기타건축용 목재제조업)

1층 330.00㎡ 공장

2층 66.00㎡ 화장실

3. 경기도 광주시 대 185㎡

4. 경기도 광주시 대 60㎡

5. 경기도 광주시 전 310㎡

6. 경기도 광주시 전 168㎡

7. 경기도 광주시 전 59㎡

8. 경기도 광주시 대 63㎡

